

—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22일

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기존의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의 운영에 있어,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은 새마을과에서,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자금관리 및 운영에 비효율적임.
- 통합 운영되고 있는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를 폐지하고, 신설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 (안 제2조)
 -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
 - 기금 이자 및 기타수입

- 가구당 융자한도 및 이율 (안 제5조)
 - 융자 한도액 : 2천만원 이하,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
 - 융자금 대부이율 : 연 3%
- 연체 이자율 조정 (안 제10조 제2항)
 -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 $\Rightarrow$ 10%(정액이율)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에 의거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은 새마을과에서,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분리운영하고 있어 자금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통합운영되고 있는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융자대상, 위원회 설치, 융자한도 및 이율, 융자금 대부신청 방법,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방법, 이자 및 연체이자,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방법 등 융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주요변경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연체 이자율을 당초 수탁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로 적용하던 것을 10% 정액이율로 변경하는 조례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